

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(제40조제1항 관련)

1.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
 - 가. 농업·임업·어업·양식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, 그 밖의 시설
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·임산물·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. 다만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또는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.
 - 다.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40미터 미만인 선박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

2.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
 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
 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 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 - 1)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(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.
 - 2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
 - 3)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
 - 4)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(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5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과목의 시설
 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(박물관,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) 및 같은 호 마목의 동·식물원(동물원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것
 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
 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학원·도서관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
-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
- 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
- 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이고 높이가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1)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외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관광농원 안에 건축하는 숙박시설
 - 2)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
- 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(농업용, 수산업용인 창고시설과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시설만 해당한다)
- 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)
- 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설묘지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해당하는 사설자연장지
- 거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
- 너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)
- 더.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- 1) 국가유산관리 또는 해양홍보·교육을 위한 시설
 - 2) 「습지보전법」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·이용시설
 - 3)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(레이더 기지, 진지, 초소)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
 - 4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(어촌계를 포함한다)의 공동구판장·하치장 및 창고
 - 5) 사회복지시설
 - 6) 환경오염방지시설
 - 7)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
- 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

며.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라목의 계류시설

며. 태양광·풍력 및 수력 발전시설. 이 경우 수력 발전시설은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하는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하는 발전시설로 한정한다.

서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중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

어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폐교된 이후 폐교되기 전에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및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생활의 질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1) 유아, 청소년,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도서관, 박물관,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

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

3)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

4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

5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

3.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

가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조림, 육림 및 임도의 설치

나. 국가유산의 복원

다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 및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

라. 토지의 합병 및 분할

마.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·보수, 적조 방지,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토석의 채취

바.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서 하는 공유수면의 준설,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

의 채광

- 사. 해양 오염원 및 배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한 물
건,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
른 선박용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
- 아. 국가·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구
역·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
- 자. 통신선로설비, 안테나, 전봇대, 열공급시설, 송유시설, 수도공급설비 및 하
수도의 설치
- 차. 국가·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공
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
소, 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해당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
- 카. 「연안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
- 타.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의 설치. 다만, 같
은 목 5)에 따른 생선횃집과 같은 목 6)에 따른 휴게시설은 「하수도법」
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
있다.